

문서번호	총무처-42697
보존기간	준영구
결재일자	2018.11.27.
공개여부	공개
방침번호	이사장 방침 제 168호

★차장	팀장	총무처장	경영전략본부장	이사장
협 조				

운동부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018.

운동부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제안요지)

1. 개정이유

- 가. 감사실 「2017 경영전략본부 종합감사」 지적(개선)사항
 - 경기인(지도자, 선수) 선발시 자체심의기능(심의위원회) 추가
- 나. 관계기관의 명칭 변경
- 다. 개인정보 수집 관련 서식 정비

2. 주요내용

- 가. 훈련계획의 분기별 실시사항 종합보고를 훈련일지로 갈음(안 제5조)
- 나. 심의위원회 구성 추가 및 관계기관의 명칭 변경(안 제8조)(안 제8조의2)(안 제8조의3)
 - 경기인(지도자, 선수) 추천기관 명확화 및 영입 심의위원회 구성 신설
 - 관계기관의 명칭 변경
 - ‘서울시체육회’를 ‘서울특별시체육회’로,
 - ‘서울시볼링협회’를 ‘서울특별시볼링협회’로,
 - ‘대한우슈쿱협회’를 ‘대한우슈협회’로,
 - ‘서울시 우수쿱협회’를 ‘서울특별시우슈협회’로 변경
- 다. <별지 제4호 서식> ‘신상기록카드’는 ‘계약직직원관리내규 별지 제3호 서식 인사기록카드’를 준용하므로 운동부운영규정에서는 삭제(주민등록번호 삭제)

3. 참고사항

- 가. 제안근거
 - 경영전략본부 종합감사 결과 통보(감사실-5849, 2017.11.1)
 - 규정관리규정 제7조(입안) 및 제10조(절차)
-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음, 규정개정안 심의 결과 반영
- 라. 절 차 : 이사장 결재 후 공포·시행

운동부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운동부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연간 대회출전계획 및 훈련계획의 수립 및 보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지도자 및 선수 선발) ① 지도자는 동일종목협회 또는 서울특별시체육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수는 공단 동일종목 감독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동일종목협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 이사장이 선발 한다.

② 제1항의 동일종목협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볼 링 : 대한볼링협회 또는 서울특별시볼링협회
2. 우 슈 : 대한우슈협회 또는 서울특별시우슈협회

제8조 다음에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4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단장을 위원장으로, 부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 및 주재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④ 심의위원회는 선수의 영입가부, 영입할 선수의 연봉 등급 등을 심의한다.

⑤ 기타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위원회 관리 규정 또는 이사장 방침에 따른다.

제8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그 위원장이나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장이나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기피결정을 받은 당해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
2.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신상기록카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업무범위) ①~③ 생략</p> <p>④지도자(코치)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1.~3. (생 략)</p> <p>4. <u>선수에 대한 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보고(년간계획수립 및 분기별 실시사항 종합보고)</u></p> <p>5.~6. (생 략)</p>	<p>제5조(업무범위) ①~③ (현행과 같음)</p> <p>④-----</p> <p>-----.</p> <p>1.~3. (현행과 같음)</p> <p>4. <u>연간 대회출전계획 및 훈련계획의 수립 및 보고</u></p> <p>5.~6. (현행과 같음)</p>
<p>제8조(선발) ①지도자는 동일종목협회 또는 <u>서울시체육회</u>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수는 공단 동일종목 <u>감독 및 학교</u> 또는 동일종목협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u>이사장이</u> 선발 한다.</p> <p>②제1항의 동일종목협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볼 링 : <u>대한볼링협회</u> 또는 <u>서울시 볼링협회</u></p> <p>2. 우 슈 : <u>대한우슈쿵푸협회</u> 또는 <u>서울시 우슈쿵푸협회</u></p> <p><u><신 설></u></p>	<p>제8조(<u>지도자 및 선수 선발</u>) ①지도자는 동일종목협회 또는 <u>서울특별시체육회</u>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수는 공단 동일종목 감독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동일종목협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u>심의위원회를 거쳐</u> 이사장이 선발 한다.</p> <p>②제1항의 동일종목협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볼 링 : <u>대한볼링협회</u> 또는 <u>서울특별시볼링협회</u></p> <p>2. 우 슈 : <u>대한우슈협회</u> 또는 <u>서울특별시우슈협회</u></p> <p>제8조의2(<u>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u>) ① <u>심의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4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단장을 위원장으로, 부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u></p> <p>② <u>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 및 주재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u></p> <p>③ <u>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u></p> <p>④ <u>심의위원회는 선수의 영입가부, 영입할</u></p>

선수의 연봉 등급 등을 심의한다.

- ⑤ 기타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위원회 관리 규정 또는 이사장 방침에 따른다.

제8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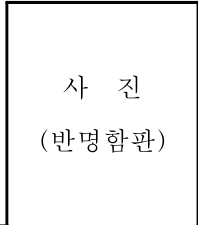
1. 위원 본인과 관계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심의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그 위원장이나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장이나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기피결정을 받은 당해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
2.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신상 기록 카드



성명 (한자)	()			주민등록 번호					주소 (전화번호)		()		
병역 사항	미필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입대 년월일	제대 년월일	신체 사항	신장	체중	혈액 형	종교	취미
									cm	kg			
가족 사항								재산 사항	동산		부동산	재산총액	
									천원		천원	천원	
가 족 사 항	관계	성명		생년월일		직업		관계	성명		생년 월일	직업	
학 력	기간		학교명 및 전공학과				기간		학교명 및 전공학과				
	부터	까지					부터	까지					
전 력	기간		근무처				기간		근무처				
	부터	까지					부터	까지					
입· 퇴 단	년월일	직위	구분	방렬청		년월일	직위	구분	방렬청				
자격 증 소 지 사 항	년월일	자격종류	발행청		상 별 사 항	년월일	자격종류	발행청					